

# 지역·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·결정 [ ]협의 [ ]변경협의 요청서

(앞쪽)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협의요청기관의 장	
지정·결정 목적	
근거 법령	

협의대상 산지	소재지	번지 외 필지			
	구분	계(㎡)	보전산지(㎡)		준보전산지(㎡)
			임업용산지	공익용산지	
계					
국유지					
공유지					
사유지					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에서의 지역·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·결정을 위한 [ ]협의 [ 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 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\* 첨부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: 뒤쪽 참조

<p>첨부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·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</li> <li>2.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자·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(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)</li> <li>3.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</li> <li>4.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(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숲의 종류·모양나이, 나무의 종류, 평균나무높이,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</li> <li>나. 산불발생·숙아베기·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·숙아베기·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·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</li> <li>다.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·작성되었을 것</li> </ol> </li> <li>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) 1부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</li> <li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사·토목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</li> <li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li>6. 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.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.</li> </ol>	<p>수수료 없음</p>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

**유의사항**

1. 제4호, 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합니다.
2.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첨부서류(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에 관한 결과서)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